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쪽방주민 재정착을 위해 1인가구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등에 사항을 정비하고, 대전 쪽방촌 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물보상대상 토지면적 기준 조정(안 제20조의8)

대전 쪽방촌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여 현물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안 제34조의4)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를 면제하고,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대체 근거 마련

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4)

쪽방촌 사업 특성등을 고려, 전용면적 30㎡ 미만의 통합공공 임대주택의 주차장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6항제2호 중 “광주광역시”를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않을 수 있다.”를 “않을 수 있고, 입주대상이 쪽방거주자 등 1인가구 중심의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 제4호 중 예외조항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입주대상이 쪽방거주자 등 1인가구 중심의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전용면적 30㎡ 미만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하며, 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8(현물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 ⑤ (생략)</p> <p>⑥ 영 별표4의3제1호가목2)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토지의 총 소유면적의 시·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광주광역시</u> : 60제곱미터 이상</p> <p>3. 부산광역시, <u>대구광역시</u>, <u>대전광역시</u>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의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p> <p>4. (생략)</p> <p>⑦ (생략)</p> <p>제34조의4(어린이집) ① (생략)</p> <p>②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정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설치한다. 다만, 산정된 정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u>않을 수 있다.</u> <후단 신설></p>	<p>제20조의8(현물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광주광역시</u>, <u>대전광역시</u> ----- --</p> <p>3. ----- <u>대구광역시</u> ----- ----- ----- -----</p> <p>4.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4(어린이집)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않을 수 있고, 입주대상이</u> <u>쪽방거주자 등 1인가구 중심의</u></p>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별표4] 주차장설치기준

4. 통합공공임대주택

적용 면적별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 지역
40㎡ 미만	0.80	0.75	0.70	0.70
40㎡ ~ 50㎡	0.90	0.85	0.80	0.75
50㎡ ~ 60㎡	1.00	0.95	0.90	0.85
60㎡ ~ 70㎡	1.00	1.00	1.00	1.00
70㎡ ~ 85㎡	1.10	1.00	1.00	1.00
예외조 항	가.~나. 생략 다.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4] 주차장설치기준

4. 통합공공임대주택

적용 면적별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 지역
40㎡ 미만	0.80	0.75	0.70	0.70
40㎡ ~ 50㎡	0.90	0.85	0.80	0.75
50㎡ ~ 60㎡	1.00	0.95	0.90	0.85
60㎡ ~ 70㎡	1.00	1.00	1.00	1.00
70㎡ ~ 85㎡	1.10	1.00	1.00	1.00
예외조 항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입주대상이 쪽방거주자 등 1인 가구 중심의 취약계층으로 특 화된 전용면적 30㎡ 미만의 통 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 택 기준을 준용하며, 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 통합공공임 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